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발급 용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 확대(안 제3조제2항)

미성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에게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함.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시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방법 추가(안 제4조 제1항제5호 신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2022.1.11. 공포, '22.7.12. 시행)으로 주민등록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어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방법에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추가함.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용도 기재 간소화(안 제5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 부동산 매도와 자동차 매도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인감증명서에 비해 용도 세분화로 민원 처리 과정에 혼란이 있어 용도란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개선함.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안 제14조제1항제1호)

인감증명 제도에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고 발급실적이 저조하여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안 제14조제2항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개정, 제14호 신설)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명확히 규정(안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법 제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법 제5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법 제5조제2항제1호”를 “법 제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를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을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민등록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련 용도”를 “매도용”으로, “매도 용도”를 “매도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무료로 발급 한다.

제14조제2항제8호, 제11호 및 제12호 중 “해당한다”를 각각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용도란 중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를 “매도용”으로 하고,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를 “[] 부동산 매수자, [] 자동차 매수자”로 하며, 그 외의 용도”를 “일반용”으로 하고, “거래 상대방(매수자 등)”은 삭제하며,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중 3.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용도란[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매수자”로 하고, 4.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거래상대방란은 거래상대방”을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매수자란은 매수자”로 하며, “거래상대방란”을 “매수자란”으로 하고, 5. “그 외의 용도란”을 “일반용도란”으로 하며, “제출하는 기관”을 “제출받는 기관”으로 하고, “[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을 “[예시: 근저당설정용, 가등기설정용, 은행제출용,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으로 하며, 9.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300원을 받습니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로 하고, 상단 제목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결재”란을 삭제하고, 용도란의 “구분”, “내용”란을 삭제하며, 용도란 아래 “(해당란에 √)”를 신설하고, 용도란의 “[] 소유권 이전 [] 제한물권 설정 [] 그 밖의 용도 [] 자동차매도용 [] 그 외의 용도”를 “[] 부동산매도용 [] 자동차매도용 [] 일반용”으로 하며, “거래상대방”란을 삭제하며, “발급통수”란을 추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용도란 중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를 “매도용”으로 하고,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를 “[] 부동산 매수자, [] 자동차 매수자”로 하며, 그 외의 용도”를 “일반용”으로 하고, “거래 상대방(매수자 등)”은 삭제하며, 같은 서식 중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기재사항”란은 “비고”로 하고,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중 2. “용도란[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용도란[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매수자”로 하고, 3. “용도란 중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을 “용도란 중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도”로 하며, 4. “그 외의 용도란”을 “일반용도란”으로 하며, “제출하는 기관”을 “제출받는 기관”으로 하고, “[예시: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을 “[예시: 근저당설정용, 가등기설정용, 은행제출용,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으로 하며, 상단 제목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2. 발급절차 중 1) “민원 24 접속”을 “정부24 접속”으로 하고, “민원24 사이트”를 “정부24 사이트(www.gov.kr)”로 하며, “민원24 아이디”를 “정부24 아이디”로 하고,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항목 중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을 “용도, 매수자 인적사항 등 작성”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2. 발급절차 중 1) “민원 24 접속”을 “정부24 접속”으로 하고, “민원24 사이트”를 “정부24 사이트(www.gov.kr)”로 하며, “민원24 아이디”를 “정부24 아이디”로 하고,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항목 중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을 “용도, 매수자 인적사항 등 작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2. 발급절차 중 1) “민원 24 접속”을 “정부24 접속”으로 하고, “민원24 사이트”를 “정부24 사이트(www.gov.kr)”로 하며, “민원24 아이디”를 “정부24 아이디”로 하고,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항목 중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을 “용도, 매수자 인적사항 등 작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2. 발급절차 중 1) “민원 24 접속”을 “정부24 접속”으로 하고, “민원24 사이트”를 “정부24 사이트(www.gov.kr)”로 하며, “민원24 아이디”를 “정부24 아이디”로 하고,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항목 중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 작성”을 “용도, 매수자 인적사항 등 작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 (한자)	()	서	
주민등록번호		명	
주소			
용도	매도용	[] 부동산 매수자, [] 자동차 매수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일반용	주소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 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용도란[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경우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합니다]과 위임받은 사람란은 신청인으로부터 구술이나 서면으로 정보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입력하고, 신청인은 전산 입력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그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도의 매수자란은 매수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등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기관인 경우에는 매수자란에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용도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받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근로당실정용, 가등기설정용, 은행제출용,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 위임받은 사람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증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시: ○○○ 법무사).
- 발급 이후에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고란은 미성년자 또는 파한정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신청인 성명	용도 (해당란에 √)	발급 통수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확인	비 고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input type="checkbox"/> 부동산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자동차매도용 <input type="checkbox"/> 일반용				

작성방법

-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토큰 방식"이란 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면·동·출장소)

-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인증서 발급 신청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 또는 전에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정부24 접속

-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정부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인증서 암호 입력
-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용도, 매수자 인적사항 등 작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4) 전자서명(인증서 사용)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이용 승인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여권번호	성별 [] 남 [] 여
	국내 최종주소지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보안토큰 방식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신청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토큰 방식"이란 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면·동·출장소)

-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인증서 발급 신청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 또는 전에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정부24 접속

-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정부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인증서 암호 입력
-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용도, 매수자 인적사항 등 작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4) 전자서명(인증서 사용)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국내거소신고일	체류자격·직업	체류기간	
	국내거소지			여권 유효기간
	전화번호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input type="checkbox"/> 보안토큰 방식 <input type="checkbox"/>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 신청	<input type="checkbox"/>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성명 :)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사유	<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input type="checkbox"/> 피한정후견인	
동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토큰 방식"이란 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면·동·출장소)

-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인증서 발급 신청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 또는 전에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정부24 접속

-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정부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인증서 암호 입력
-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용도, 매수자 인적사항 등 작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4) 전자서명(인증서 사용)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 이용 승인 신청서 [] 이용 철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국적	
	입국일자	체류자격·직업	체류기간	
	국내체류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추가 보안수단	[] 보안토큰 방식 [] 전화 인증 방식		
	그 밖의 서비스신청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	(성명:)에 대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사유	[] 미성년자 [] 피한정후견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함),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만 해당함)]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추가 보안수단 또는 그 밖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 표를 하며,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는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수단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토큰 방식"이란 인증서가 저장된 보안토큰에 의한 인증방식을 말합니다.
 - "전화 인증 방식"이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로 안내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발급사실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에 미리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사유의 해당란에 √ 표를 합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 동의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1. 이용승인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 및 승인
(읍·면·동·출장소)

- 읍·면·동·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의 의사표시 및 이용 승인 신청
- 본인신분 확인 후 승인

인증서 발급 신청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등록대행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신청
- 또는 전에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1) 정부24 접속

-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정부24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인증서 암호 입력
- 보안토큰 또는 전화 인증 방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용도, 매수자 인적사항 등 작성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행정기관등 지정 (지정된 행정기관등만 열람 가능)

4) 전자서명(인증서 사용)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 확인

5)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완료 및 발급시스템에 저장

3. 활용절차

발급증 출력 및 행정기관등에 제출

- 발급번호, 성명 등이 적힌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등에 제출 (인감증명서 제출과 동일한 효력)
-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음

행정기관등의 확인 및 업무처리

- 행정기관등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통하여 발급 확인

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면장을 말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 -

한다)

발급기관

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생략)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5. · 6. (생략)

② (생략)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 ② (생략)

③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 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용도(부동산 관련 용도 또는 자동차 매도 용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란과 위임받은 사람란(위임받은 사람이 본인서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주민등록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매도용 ----- 매도용-----

-----.

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신청인으로부터 그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④ ~ ⑧ (생략)

제14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통에 600원.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300원으로 한다.

2.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 7. (생략)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9. · 10.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수수료) ① -----

1. -----
- 다만,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무료로 발급 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1. ~ 7. (현행과 같음)

8. -----

---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
다-----

9. · 10. (현행과 같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13. (생략)
<신설>

11. -----

-----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12. -----

-----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13. (현행과 같음)

14.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5 - 3152